

울산대학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본교에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누적 기부금액”이란 기부자가 본교에 기부한 금액의 누계를 말한다.
3. “예우등급”이란 누적 기부금액에 따라 부여하는 기린, 문수, 해송, 국화 등급을 말한다.
4. “의료 및 장례 예우”란 울산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진료비, 종합검진, 장례비 감면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예우등급)

기부자 예우등급은 누적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린: 3억 원 이상
2. 문수: 1억 원 이상
3. 해송: 3천만 원 이상
4. 국화: 1천만 원 이상

제4조(적용원칙)

- ① 기부자 예우는 누적 기부금액에 따른 최고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② 법인·단체 기부자의 경우 각종 예우는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적용한다.
- ③ 각 예우사항의 적용 대상, 기간 및 범위는 이 지침 및 관계 부서 또는 기관의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른다.

- ④ 기부자 예우는 본교의 예산, 시설 운영 여건 및 관계 부서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⑤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예우는 본 지침 시행 이후부터의 누적 기부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기부자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명예헌정)

기부자의 대학 발전 기여도를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헌정을 할 수 있다.

- 1. 기금명칭 부여: 기린, 문수, 해송 등급 기부자
- 2. 명예의 전당 등재: 국화 등급 이상 기부자

제6조(학교시설 이용 편의 및 교육 혜택)

- ① 교내 무료 주차 혜택은 해송 등급 이상 기부자에게 제공하며, 적용 대상은 본인 명의 차량 1대로 하고 적용 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 ② 특수대학원 등록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적용 등급: 기린 30%, 문수 10%
 - 2. 적용 대상: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
 - 3. 적용 횟수: 대학원별 수업연한 범위 내 최대 5회
 - 4. 대상 대학원: 정책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차세대이차 전지융합대학원, 탄소중립기술융합대학원
- ③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기린: 100%(5년)
 - 2. 문수: 50%(5년)
 - 3. 해송: 30%(5년)
 - 4. 국화: 10%(5년)
- ④ 아산스포츠센터 수강료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문수 이상: 50%(10년)
 - 2. 국화 이상: 30%(5년)

- ⑤ 중앙도서관 명예회원 자격은 국화 등급 이상 기부자에게 제공하며, 적용 대상은 본인으로 하고 적용 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⑥ 제5항의 혜택 내용은 단행본 대출 20권(14일), 전자책 대출 5권(7일), 멀티 미디어 대출 5점(7일), 열람실 이용으로 한다.

제7조(특별초청)

- ① 제3조에 따른 예우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기부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기부금 전달식에는 기부금액이 문수 등급 이상인 경우 총장이 참석하며, 그 외 국화 등급 이상인 경우 부총장이 참석한다.

제8조(기념품 및 간행물 제공)

- ① 본교는 국화 등급 이상 기부자에게 Membership 카드 및 안내 리플렛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국화 등급 이상 기부자에게 감사패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본교는 당해연도 기부자에게 웹진, 캘린더 등 간행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울산대학교병원 의료 및 장례 예우)

- ① 울산대학교병원 의료 및 장례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진료비 감면(급여항목)

- 가. 10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0%(평생)
- 나. 5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50%(평생)
- 다. 1억 원 이상: 본인 50%(10년)

2. 종합검진

- 가. 5억 원 이상: 프리미엄 검진 매년 1회(본인, 배우자)
- 나. 5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 검진권 2매
- 다. 1천만 원 이상: 기본 검진권 2매

3. 장례비 감면(본인, 배우자)

- 가. 5억 원 이상: 빈소 100%, 용품 100%

나. 1억 원 이상: 빈소 100%, 용품 50%

다. 1천만 원 이상: 빈소 50%, 용품 20%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및 장례 예우의 세부 적용은 울산대학교병원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 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총괄 업무는 기획처 대외홍보팀이 담당한다.
- ② 각 예우사항의 세부 운영은 관계 부서가 담당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1조(홍보)

본교는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소식지, 웹진, 기념행사 등을 통해 기부자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관리규정」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울산대학교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구분 예우사항		현재 시행여부	기린	문수	해송	국화	비고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명예 한정	명예의 전당 등재	○	○	○	○	○	일시 납입금 기준
	기금명칭 부여	○	○	○	-	-	
	기부금 전달식	총장	○	○	-	-	
		부총장	○	-	○	○	
	감사패	X	○	○	○	○	
	멤버십 카드 발급 (안내 리플렛 포함)	X	○	○	○	○	
시설 이용	캠퍼스 무료주차	X	무료(평생)	무료(평생)	무료(평생)	-	학위과정
	특수대학원 등록금 감면	X	30%	10%	-	-	
	평생교육원 할인	X	100%(5년)	50%(5년)	30%(5년)	10%(5년)	
	아산스포츠허브 할인	X	50%(10년)	50%(10년)	30%(5년)	30%(5년)	
	중앙도서관 이용(명예회원)	X	○	○	○	○	
기념품 및 간행물	기념품 발송	X	○	○	○	○	
	웹진 발송	○	○	○	○	○	
	학교 달력 발송	○	○	○	○	○	
기부금액		현재 시행여부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의료 및 장례 예우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급여항목)	X	100%(평생) 본인, 배우자	50%(평생) 본인, 배우자	50%(10년) 본인		
	종합검진	X	프리미엄 검진 매년 1회 (본인, 배우자)		프리미엄 검진권 2매		기본검진권 2매
	장례비 감면 (본인/배우자)	빈소	100%			50%	
		용품	100%		50%	20%	